

# 2월의 안테나

월간양계

노영환

(本誌 편집국장)

## 사료가격도 오른다면 오릅니다

지난 1월21일 농수산부는 현행배합사료가격을 1월22일부터 평균 28.3% 인상한 최고가격을 조정발표 하였다.

소위 1.21사료발전으로 불리는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업계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정부의 건의하던 것이 일부 이루어진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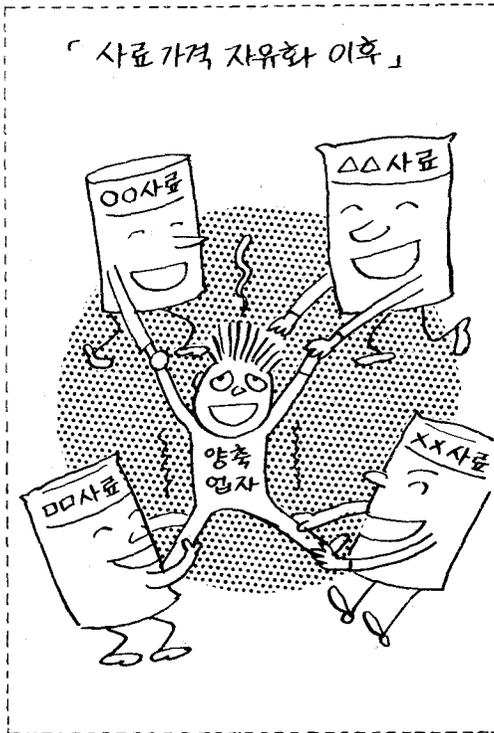
작년 12월초부터 사료가격이 인상되리라는 풍문은 끊임없이 업계에 돌았고 옥수수 도입가격이 사료공장 공급가격보다도 훨씬 비싸지고 대두박의 경우도 가격인상요인이 커지자 이 풍문은 사료가격 인상이 건박한 것으로 변하여 12월 중순에는 배합사료의 가수요까지 발생하게 되었었다. 그러나 당시 업계

사정이 닭 배지를 비롯한 모든 축산업이 불황에 허덕이고 있어서 인상사기로 적당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그 시기를 미루어 왔었다.

그러던중 지난 1.12환율인상으로 어쩔수 없이 이번 1.21조치를 하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농수산부가 경제기획원과 협의하여 발표한 내용의 주요 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앞으로 환율 금리 원자재등 모든 사료가격 인상 요인이 있을때는 배합사료 가격을 자율화 해서 판매하게 하였고
2. 양축가가 요구하는 주문 배합사료를 2월 1일부터 성분등록을 허용함으로써 각 사료공장에서 양축가가 원하는 사료를 서로 협의하여 적정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닭의 품종 계통에 따라 적절한 사료를 급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3. 농축사료 등 특수용사료의 생산판매는 농협직영 공장및 농수산부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서만 생산공급한다.
4. 도입옥수수의 공급가격을 C&F기준 \$ 160/t으로 조정함으로써 정부의 변동환율제 운영에 맞추어 도입옥수수 공급가격이



소폭이나마 수시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어 사료공장의 원료구매자는 이것도 신경을 써야되게 되었다.

이번 1.21조치로 지금까지 배합사료 품질이 나빠던것은 가격고정 때문이라는 말을 사료공장만은 하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각종 약품 영양제등의 첨가가 안될때마다 사료가격고정에 그 이유를 두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해결 되었으면 한다.

이번 1.21조치는 그 시기를 축산업계가 불황으로 위축되고 사료물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신규 대형사료공장의 출현과 기존 공장의 대형화로 생산능력이 충분한 것등 그 시기로 보아 완전 자유화해도 별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람이 부는것이 보이지는 않아도 나무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는것을 알수 있듯이 2월 인상 또는 3월 인상실등 발

표에도 배합사료 가수요와 사재기 현상을 보고 사료가격 조정이 곧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었다.

앞으로 배합사료공장들은 품질 가격 판매 조건(외상판매등) 경제성 각종 서비스 등 여러 형태의 경쟁이 예상되며 경쟁력이 약한회사 또는 과거의 물량조절로 비교적 안이한 판매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회사는 판매에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가 하나더 바라는 것은 과거 배합사료 원료가 한때나마 공급이 원활하지 못 한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주원료인 옥수수공급까지도 원료부족 현상으로 배합사료를 생산하지 못하였던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충분한 원료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수입 자유화등 제도적인 장치가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보인다.

이번 1.21 발표후 배합사료가격이 완전 자유화된 것으로 알려져 일부 배합사료 공장에서 이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었으나 이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농수산부는 1.25일 자구 해석상 아리송한 문제에 대한 보완 설명 형식의 공문을 관련 단체에 보냈는데 그 내용도 함께 게재한다.

배합사료 최고가격의 인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1.21일 농수산부 발표)

### 농수산부 공문내용

(사료 1164-98)

1980. 1. 21

1. 79.4.1조정시행중인 현행 배합사료 가격은 국제곡류(옥수수, 대두등)가격의 상승과 국내사료자원 활용의 일환으로 국내산 옥수수의 이용및 국내 유류가격의 인상에 따른 제조경비 상승등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배합사료의 공장도 최고판매가격을 지정하여 80.1.22부터 시행하니 다음 사항을 각별 유

넘하여 배합사료 가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사료 1164.3-2451 (79.12.8)호의 관련 양축가가 요구하는 주문 배합사료와 성분등록 보류에 대하여는 80.2.1부터 등록을 허용하니 업무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고

3. 배합사료공장의 도입옥수수 재고물량조사에 대하여는 축산진흥회장의 주관하에 관계기관인 시도 및 사료조절단체(농협, 사협)가 공동으로 조치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

## 다 음

가. 배합사료 원료중 도입옥수수의 공급 가격

(1) 사료가격안정 기금운영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도입옥수수의 공급가격은 현행 C&F \$135/톤(도입제비포함: 70,500원)에서 C & F \$160/톤으로 상향 조정

(2) 상기조정 공급가격은 '80.1.22 현재 재고물량부터 적용한다. (재고 물량조사는 축산진흥회가 주관하여 시도지사와 사료조절단체(농협, 사협)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3) 사료의 안정기준 가격및 환율조정에 따른 차액처리 원칙은 (별첨)과 같이 실시한다.

나. '79년산 국산옥수수 69,000톤 사용에 따른 도입옥수수와 의 차액은 배합사료 가격에 합산반영한다. (기타 인수 방법및 인수시기는 기 지시 완료)

다. 대두박공급가격은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현행kg 당139.70원에서 175.61원으로 25.7%, 대두유는 kg 당715.09원에서 834.16원으로 16.7%각각 인상조정 하며 향후는 환율, 금리, 원자재등 제 변동요인에 부응하여 가격을 자유화한다.

라. 배합사료중 분체사료는 금번 공장도 최고판매가격 지정후 환율의 연동제실시, 금리(USANCE, CCC일반금리등)의 변동, 안정기준가격 품목인 옥수수를 제외한 수입원자

재등의 변동추세에 적응토록 자유화하고 특히 고효율 성형사료(pellet 등)는 제조과정이 특수하고 제조과정이 특수하여 제조 과정중 경비가 추가 소요되는점을 감안 가격을 자유화 하여 업체로 하여금 자율 조절체제를 갖추도록 한다.

마. 사료성분량 한도고시 이외의 가축용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제조업자가 임의 등록한 배합비에따라 당부가 사정한 방법으로 원료별단가, 포장비, 제조경비, 이윤, 감량등을 참고하여 시도지사가 판매가격을 사정한 후 상기 자율화 원칙에 부응토록 조치하고 국공립시험연구 기관과 양축가가 요구하는 주문배합사료가격에 대하여는 제조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토록 한다. (제주도의 해상운송에 따른 추가부담 요인도 상기 원칙을 준수)

바. 반제품 배합사료인 대용유 공급 가격은 외국산 도입가격보다 낮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며 기타 반제품 배합사료인 발효사료에 대하여도 국내자원의 개발이용을 감안하여 업체의 자율 가격으로 한다.

사. 특수용 사료(소, 농축사료, 육성비육, 큰소비육)생산판매는 기지시 한바와 같이 별도 지시가있을때까지 농협직영 공장및 당부에서 승인받은 공장에서만 생산공급 토록한다.

80.1.2. 일 농수산부가 배합사료가격 인상예포에 대한 잘못 이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유권 해석은 아래와 같다(1. 26일)

## 농수산부 공문내용

(사료 1164-98호)

가. 금번 배합사료가격의 조정은 현황사료

성분량 한도고시 품목에 대한 공장도 최고 판매가격의 지정이며

나. 배합사료가격조정중 자유화의 개념은 향후 환율및 금리의 변동, 기타 수입원자 재등 제반변동요인의 발생시 적용하겠다는 취지이며 이와같은 여건변동이 있을때는 구체적인 방침을 별도 시달할 계획임.

다. 다만 제조과정이 특수한 성형사료(Pellet 등)와 반제품 배합사료인 발효사료를 생산할 시는 판매가격을 자율화하고

라. 국공립시험연구기관과 양축가가 요구하는 주문 배합사료(분체 성형)에 대하여는 요구사료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자와 양축가간의 상호협의 가격으로 결정토록한 것임.

마. 사료관리법 제8조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사료성분등록은 사료성분량 한도고시 범위내에서 1개품목에 한하며(주문 배합사료는 예외임)

바. 도입곡류(옥수수, 수수)는 안정기준 가격 제도를 계속 지속하고 소맥피, 맥강등 강피류는 정부고시 가격으로 존속토록한 것임.

**품목별 배합사료 가격조정 총괄표(p. 37 참조)**

**배합사료가격조정사유및원칙**

**1. 조정사유 및 원칙**

○국제옥수수 가격의 앙등으로 사료의 안정기준가격 인상불가피

현행 : C & F \$135/톤 → 조정 : \$160

○국산옥수수(69천톤)사용에 따른 도입옥수수가격차 합산 반영

○국제대두가격 앙등에 따른 대두박 공급가격 조정

현행: C & F \$295.15/톤 → 조정 : \$309.50

○국내유류가격인상에 따른 포장비 제조관리비등 제비용의 현실화

○'80. 1. 12일 환율조정에 따른 국제곡류(옥수수, 대두)가격 추가조정 불가피(11.8%)

**2. 주요 요인별 인상내역**

구	분	배합사료가격에 미치는인상율
도입옥수수	가격인상	11.0%
국산옥수수	합산반영	1.8
대두박	공급가격 인상	1.1
제조경비 및 포장비인상		2.6
환율조정(옥수수, 대두)		11.8
계(인상율)		28.3

**사료의 안정기준가격 및 환율조정에 따른 인상차액 처리원칙**

**1. 원칙**

○재고물량에 대한 인상차액은 사료가격 안정기금에 추가 적립한다.

○인상차액 : 29,972원/톤 (100,472 - 70,500원)

**2. 인상차액 회수 방법**

가. 기대금결재 완료분은 재고조사일로 부터 15일 이내 회수

나. 대금 미결제분은 당해 모션 잔대금 결재일에 회수

다. 대금 미결제분중 조사일로부터 15일 이내 대금 결제 도래분은 가항에 준하여 회수

**3. 재고물량 확인**

재고물량 확인은 80. 1. 22 현재의 물량을 적용하되 축산진흥회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시도 관계공무원의 공동확인을 받아 처리한다.

**4. 처리결과 보고 및 승인**

축산진흥회장은 재고량확인에 따른 인상차액의 처리 결과를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다만, 수수는 사료가격안정기금 품목이 아니므로 실 수요자가 부담토록 조치한다.

배합사료가격원가계산예시 (산란초기)

(단위 : 원/M/T)

구 분	단 위		배 합 비	가 격		비 고
	일 반 공정	농축협공장		일 발 공 장	농축협공장	
○ 원자료비						
옥 수 수	110,588	110,588	61.6%	68,122	68,122	
소 맥 피	44,752	44,652	4.5"	2,013	2,009	
맥 당	44,752	44,652	1.5"	671	669	
탈 지 당	69,000	75,900	2.0"	1,380	1,518	
대 두 박	165,890	182,479	14.4"	23,888	26,276	
박 류(上)	134,162	147,578	2.0"	2,683	2,951	
어 분(中)	195,125	214,637	3.9"	7,610	8,370	
패 분	14,891	16,380	8.9"	1,325	1,457	
골분, 인산칼슘	197,000	216,700	0.4"	788	866	
食 塩	49,880	49,880	0.3"	150	150	
첨 가 제	460,760	506,836	0.5"	2,304	2,534	
(소 계)			110.0"	110,934	114,922	
포 장 비	3,008	3,008		3,008	3,008	
성 량(1%)				1,139	1,179	
制 振 濟 買 入 供 劑				△ 5,755		
I. 실원재료비계				109,326	119,109	
II. 제 조 경 비				8,250	8,250	
III. 利 潤 ((I+II)×4%)				4,703	5,094	
IV. 計				122,279	132,453	
※ 부 가 가 치 세 (IV×1.1)				12,227		
공 장 도 판 매 가 격				134,506	132,453	

담배 한갑대신  
계란 한줄을

유엔은 79년을 세계아동의해로 정했었고 이에

따라 아동을 위한 많은 행사가 있었다. 금년은 금연의 해로 정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매수입이, 미국의 경우 담배제조회사의 수익이 크게 감소할 것 같다. 담배가 우리몸에 해롭다는 것은(백해무익)이미 널리 알려졌고 과학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많이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같이 정부가 담배를만들어 팔면서도 담배값에 과다한 흡연은 당신의 건강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경고문구까지 삽입할 정도니까 과다한 흡연이란 사람에 따라 다르겠으나 1일 1갑 이상으로 보아도 무

방할 것이다. 담배가 우리건강에 해로워서 금연운동을 한다면 하루 1갑씩 담배를 피우던 애연가들에게 대신 무엇을 권하는 것이 좋을 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것 같다.

담배 한갑에 300원을 기준할 때 이 돈을 절약하여 은단으로 바꿀 수도 있겠고 다른 기호품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겠으나 하루 담배 한갑 절약한 300원으로 크고 탐스러운 특란 10개로 온가족이 즐기는 방법은 어떨는지?

기왕에 금년에는 금연에 대한 많은 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담배에 대한 해독을 많은 전문의사들이 홍보할텐데 담배와 계란을 연결시켜 담배갑등에 계란 1줄로 온가족이 즐기는 광고를 하면 좋은 효과를 나타내리라 생각된다. 독지가가 한번쯤 시도해볼만하지 않을까?



## 양계산업안정과 사육규모의 감축

본지 지난 1월호 양계산업을 안정화 시키는 방안을 서울대학교 오봉국 교수와 USFG 박영인 지부장이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그간 업계에서 논의 되었던 내용과 외국의 예를 참고로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우리업계의 의견으로 발표된 것이었다. 앞으로 채란양계산업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위해서는 언젠가는 이산대로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믿으며 하루라도 늦게 실시되면 그만큼 업계의 손실이 아닐수 없다.

작년말의 계란값 폭락은 지금까지 비교적 안정되게 발전하여오던 채란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이 충격도 채란 양계업자를 동치게 하는 촉매역할을 하였다

계란 가격은 그간 회복되는듯 하더니 년초 돼지 고기나 닭고기가 크게 회복 상승세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계란값은 생산비 이상으로, 상승할 전망이 보이지 않고있다.

더욱이 사료가격의 대폭 인상은 생산비를 크게 높이는 데도 일반 경기의 침체로 계란 가격은 이를 따르지 못할것으로 보이자 계우회 연합회는 10%채란계 감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운동과 관련하여 생각나는 이야기를 소개코저 한다.

어느 낚시꾼이 낚시를 하는데 고기를 낚아 올려서 자로 재보고 1尺가 넘는 고기는 다시 연못에 놓아주고 1尺가 안되는 적은 고기만 잡는것을 뒤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하도 궁금하여 물어 보았다고 한다.

“여보 낚시꾼 당신 어째서 1尺넘는 고기는 도로 연못에 놓아 줍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집 후라이팬 직경이 1尺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고기는 요리를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이런일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으나 어렸을때 들을때와 지금은 그 느낌이 크게 다르다.

왜 그 낚시꾼은 더 큰 후라이팬을 살 생각을 못하였을까? 왜 고기를 잘라서 요리할 생각을 못할까?

계란의 소비는 과연 한계에 왔을까?

더 큰 후라이팬을 장만 할수는 없을까?

계란의 요리 방법은 한가지 뿐일까?

물고기를 잘라서 요리하듯이 말이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즉 더 큰 후라이팬을 준비하고 지금의 후라이 팬으로도 더 큰 물고기를 잘라서 요리하는 방법이 서두에 말한 채란 양제의 안정화 방안 이라고 (오봉국 박영인)생각한다.

모쪼록 채란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이번 10% 자율적 감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후라이 팬 보다 고기가 크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어쨌든 큰 후라이 팬을 구입할 돈도 없고 다른 요리 방법도 없으면 우선 잡은 고기를 놓아 주는수 밖에 없겠다.

이번 운동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더 큰 후라이팬 구입운동이나 잡은 물고기를 잘라서 요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단계로 발전하는 것은 어떨는지.

## 축산농가 부업소득범위 확대

정부는 축산농가 소득세 면세범위를 확대하기로 1월 4일 결정발표 하였다. 농수산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내용

재무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는 축산농가의 소득세 면세대상 범위를 대폭확대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시켜 주기로 하였음.

농수산부는 최근 가축가격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게되자 모처럼 축산진흥 시책으로 육성해 놓은 양축기반이 무너질 경우 그후에 닥쳐올 축산물 부족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농가소득의 귀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해 말 재무부에 축산농가의 부업소득 범위를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바

재무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의2 (농가부업 소득의 범위)에 적용을 받고 있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를 크게 확대키로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것임.

2. 적용 기준 및 범위

이번에 개정확대된 농가부업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3. 효과

이번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르면 최근의 축산분야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적기에 양축농가의 보호조치로서 재무부가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의 전체의 양축가가 적어도 축산에 의한 소득세를 면세받게 되었다.

관련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의2 (농가부업 소득의 범위) 법 제5조 제3호(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 소득”이라함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양어고공품 기타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부업적인 소득(별표3에 계기하는 농가 부업적인 축산에서 얻은 소득을 제외한다)의 합계 금액이 년 18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이상 농수산부의 발표대로 이번 농가부업축산의 규모를 확대조정 한 것은 양축농가에 큰 도움을 주게되었으나 양계를 비롯하여 몇몇 축종은 부업규모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야 될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

가축수수별 면세대상 비율

축종별	호수별면세대상율	가축수수별면세대상율
젖소	75.9%	35.9%
한우	99.9	98.72
돼지	99.9	80.5
닭	99.3	30.8

가축별	부업축산범위	총사육호수	부업축산호수	면세대상율
젖소	10두	16,387호	12,438호	75.9%
한우(육우)	20두	1,175,865	1,175,347	99.9
돼지	100두	657,517	656,759	99.9
닭	1,000수	1,172,054	1,163,653	99.3

농가 부업적인 축산의 범위

가축별	규 모	비 고
젖소	10마리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소	20	
돼지	100	
산양	100	
면양	100	
토끼	1,000	
닭	1,000	
오리	1,000	

가축 사육수수 비율로 볼때 한우의 경우는 98.7% 및 80.5%의 대부분이 면세대상이 되는 반면 양계의 경우는 오히려 안되는 30.8%로 앞으로 양돈이나 한우의 수준까지 올림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값싸게 양질의 양계산물을 계속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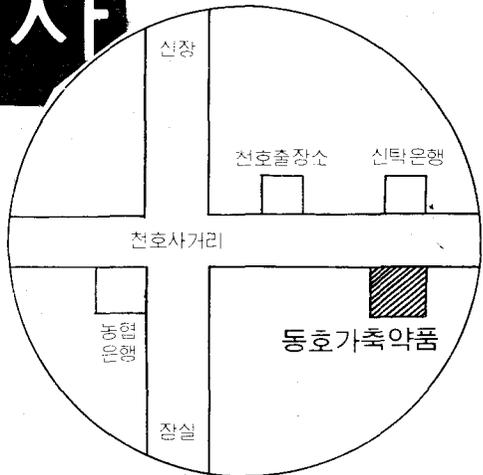
「고마운(?) 우산장수」



# 동호가축약품상사

- 난치성 질병 상담
- 칠면조 사양·질병 상담
- 가축약품 종합 판매

수의사 :  
이 동 춘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10-186

☎ 48-0865